

제24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6.24.)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3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4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	37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3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6. 3.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방재단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상금 지급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방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부단장 추가함(안 제2조)

- 단원 해촉 권한 변경(안 제6조)
 - (현행)단장 ⇒ (변경)군수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권한은 군수에게 있음
-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1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
 - 재해를 입은 날,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보상 청구
 -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
-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안 제16조)
 - 유족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름
 - 유족 대표자 선정
- 그 밖의 조문 순서, 내용 등 정비(전 조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방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 안 제2조는 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 안 제3조는 읍·면 단위 방재단
 - 안 제4조는 단장의 직무 등

- 안 제5조는 총무 및 임기
- 안 제6조 ~ 제8조는 해촉, 방재단 임무, 소집
- 안 제9조 ~ 제10조는 방재단 운영, 활동지원
- 안 제11조 ~ 제12조는 출입증 발급, 교육 및 훈련
- 안 제13조 ~ 제14조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중앙지원단 자문 등
- 안 제15조 ~ 제16조는 재해보상금 지급, 유족의 우선순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서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범위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상의 지출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방제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

③ 부단장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읍·면 단위 방재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읍·면 방재단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③ 읍·면 단위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읍·면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해당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총무 및 임기) ① 방재단에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위하여 총무 1명을 두고 총무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② 단장, 부단장, 총무,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그 밖에 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 및 신고·정비
- 3.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4. 방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관리
7. 재해 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방재단은 군 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시기·규모 등은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제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 단장은 연 2시간 이상, 단원은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제13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 하여는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 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성 명	(남/여)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위 사람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명	여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명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붙임: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위 단체는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활 동 활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서식1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순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인)

본인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
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확인자는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나 및 민간단체의 대표 등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
 - 가.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나.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5.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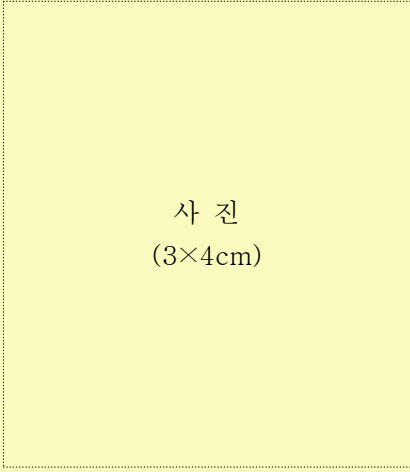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거창군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출 입 증
 <p>사 진 (3×4cm)</p>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p>NO. 000 혈액형 O(RH+)형</p> <p>성 명: _____</p> <p>생년월일: . . ()</p> <p>소 속: _____</p> <p>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인)</p>	↑ 7. 7 cm ↓

바탕 배경에 거창군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8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그 밖에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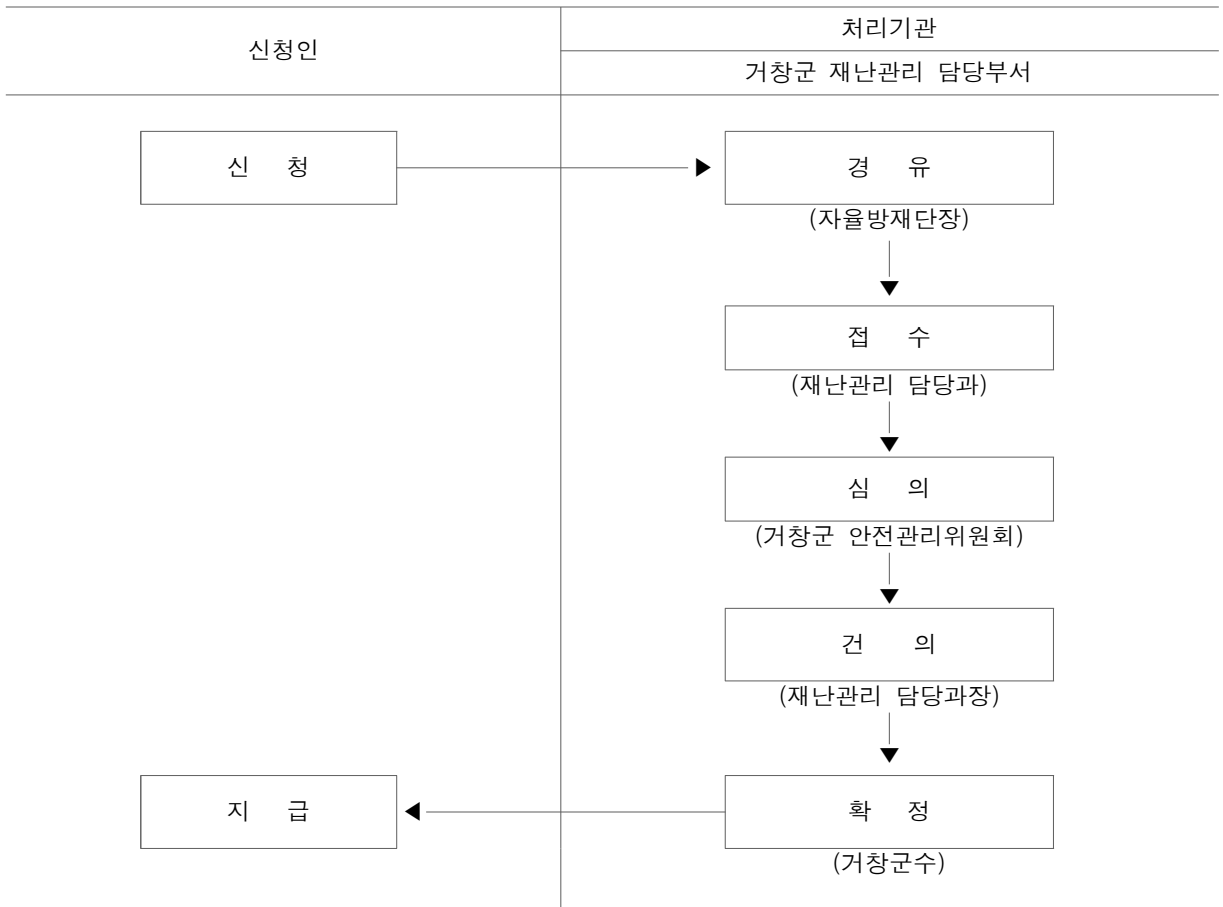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

나. 관련조문 :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9,744	9,744	9,744	9,744	9,744	48,72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운영비 보조 : 9,744천원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6. 3.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누구나 생태교육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이 쉽게 다가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별표 2)
 - 감경대상 :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 등

- 감 경 륜 : 50퍼센트
- 감경시기 :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월·8월 제외한 기간)
- 자치법규 정비대상 삭제(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료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교육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민이 쉽게 다가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8조의2(시설사용료의 감경)에서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과 재난위기경보 발령 시에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시설사용료 50% 감경 대상으로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도 주민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와 주민지원 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

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u>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4. <u>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u>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7조(입장 및 행위제한)</u> ① 군수는 생태교육장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p><u><삭 제></u></p> <p>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u>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p> <p>② <u>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u></p> <p>③ <u>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u></p>
<p><u>제14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별표 2] 무료입장 및 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u>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u> 1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u> 14. <u>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50퍼센트</u> <u>감경</u>

[별지 서식]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남 / 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에는 사용하려는 시설에 <input type="checkbox"/> 표를 합니다.	
	시설명 [] 게스트하우스, []교육세미나실,	
	사용 인원 <b style="text-align: center;">명(남 : 명/여 : 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료 감경사유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를 감경받는 경우 필요한 증명자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6. 2, 김향란의원 등 11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6. 10.
-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제4호)
 -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제5호)
 -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제6호)
 -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제7호)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제8호)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신청에 따른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삭제(현행 제6조~제10조)
 - 이유 : 지방재정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중복되어 지방자치법령 위배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 불필요한 규정 정비(현행 제11조~제13조)
 - 수당, 준용, 시행규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군민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 안 제2조는 적용범위
 -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기준
 - 안 제4조는 지원신청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 현행 조례에서 4가지 공사(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 공사,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의 경우 경남도내 시 단위는 대부분 승강기를 공용시설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주거안정과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6. 노후 소화·피뢰설비 교체 공사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통신설비 정비공사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지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2. 신청내용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업비				
보조신청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그 밖에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관리주체)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입주자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p>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p>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0,000천원/단지(최대)
- 승강기교체 지원사업은 대당 20백만원(단지당 150백만원 내)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총 비용(a - b)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00	200	200	200	200	1,000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500	500	500	500	500	2,500
세입		해당없음					
	소계(b)						

3. 관련 의견 : 해당없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10개단지 * 20,000천원/연
2.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 : 15대 * 20,000천원/연

작성자 :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 21, 거창군수(주민청구)
- 나. 회부일자 : 2020. 4. 7.
-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 가. 제안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을 정함
(안 제5조~제7조)
 - 지급대상, 방법, 지급액 등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
되는 농업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

○ 지급신청, 절차, 지원제외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 안 제2조는 정의
- 안 제3조 ~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농업인의 참여
- 안 제5조 ~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
- 안 제8조는 지급대상
- 안 제9조는 지급방법 및 지급액
- 안 제10조 ~ 12조는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지원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존중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액, 지급대상(농가 또는 농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거창군의 재정상황과 경상남도와의 부담비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에게는 정책적으로 그 대가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어업인을 포함
- 조례의 목적, 농업인의 참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는 일부 수정함
-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규칙 신설하며,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수정안 본문
3. 수정한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4. 최종안(수정안 포함)

<붙임 1> 비용추계서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지급 대상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월 100천원 지급시	농민	219	219	219	219	219	1,095
	농가	142	142	142	142	142	710
월 50천원지급시	농민	110	110	110	110	110	550
	농가	71	71	71	71	71	35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월 10만원 지급 경우

- 농민 : 18,264호×100,000원×12월 = 21,916,800,000원
- 농가 : 11,804호×100,000원×12월 = 14,164,800,000원

□ 월 5만원 지급 경우

- 농민 : 18,264호×50,000원×12월 = 10,958,400,000원
- 농가 : 11,804호×50,000원×12월 = 7,082,400,000원

※ 2019. 12월말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수

작성자 :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붙임 2>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0-32 관련
----------	---------------

발의일자	2020. 6. 22.
발 의 자	김종두 의원

1. 수정이유

- 어업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어업인을 포함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 중 농촌은 농어촌으로, 농업은 농어업, 농민·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추가함
- 제1조 목적, 제4조 농업인의 참여,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지급대상, 9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10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는 일부 수정함
-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제10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부칙에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 중“농촌”은 “농어촌”으로,“농업”은 “농어업”,“농민·농업인”은“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조 목적, 제4조 농업인의 참여,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지급대상, 9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10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는 일부 수정한다.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을 신설한다.

부칙에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조례명)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명)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조 례 안	수 정 안
	<p>말한다.</p> <p>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p>
<p>제4조(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 생태계 보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3.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 분야 전문가 3명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예산담당관 3. 경제교통과장 4. 산림과장 5. 환경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 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③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수당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p> <p>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p> <p>2. 제1호 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p> <p>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를 정한다.</p>	<p>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p>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p>

조 례 안	수 정 안
<p>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보낸다.</p> <p>④ 군수는 읍장·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읍장·면장에게 이를 알린다.</p> <p>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군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p> <p>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하게할 수 있다.</p>	<p>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2.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3.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4.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p><삭 제></p>
<p>제12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 외로 전출 등 실제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p><삭 제></p>

조 례 안	수 정 안
<p>될 때</p> <p>2. 수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p> <p>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된 농민수당을 지체 없이 돌려받아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제11조에 따른 지원제외자에게 지급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p>

<붙임 4. 최종안(수정안 포함) >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예산담당관
3. 경제교통과장
4. 산림과장
5. 환경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증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9,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6. 3.
-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가. 제안이유

-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고제면, 마리면, 남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추진개요

상호(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용량 (kW)	전체(설치)면적 (㎡)	설치장소	비고
고제베짱이사랑방 태양광발전소	오덕희	29.97	4,416(148)	고제면 봉계리 85-1 (주차장 위)	
(주)마리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	이국재	29.97	183(145)	마리면 말흘리 217-4 (주차장 위)	
(주)참깨비마을권역사업 운영위원회 태양광발전소	유영준	29.97	8,449(142)	남하면 지산로 727-13 (건물 위)	

○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재정적 문제로 사후관리 어려운 실정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 기대
(연간 수익 7백만원 / 개소당)

○ 향후 추진계획

- 2020. 7.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군 의회가 심의할 내용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4항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18.12.12.) ”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